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1994. 2

최수영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대외개방 시도 및 현황	2
1. 1984년 「합영법」 제정 배경	2
2. 외자유치 현황 및 부진 요인	3
III. 1990년대 대외개방 확대 조치	5
1. 외자유치 관련법 정비 배경	5
2.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 현황	6
3. 외자유치 관련법의 주요 특징과 의의	10
4. 외자유치 관련법의 문제점	14
IV. 대외개방 전망 및 대응방안	18
1. 외자유치 및 대외개방 전략	18
2. 대외경제개방 전망	19
3. 우리(한국)의 대응방안	22

I. 문제 제기

-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규(이하 외자유치 관련법)는 1980년대 중반과 1992년 10월 이후 두 시기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음.
 - 1980년대 중반에는 「합영법」 및 이에 따른 부수법령이 제정됨.
 - 1992년 10월 이후에는 외자유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외자유치 관련법들이 잇달아 제정되고 최근 1994년 1월에는 기존의 「합영법」이 개정됨.

- 외자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외부 충격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이에 앞서 북한은 외자유치(합영사업)를 활성화하고자 1991년 12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나진·선봉 지역에 설치하였음.

- 따라서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자유치 관련법을 새롭게 정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개방의 방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II. 대외개방 시도 및 현황

1. 1984년 「합영법」 제정 배경

- 외연적 성장에 기초한 북한경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 기대했던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도 격감하여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이를 인식한 북한은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 유럽 및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들여오는 등 이들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시도하였음.
- 그러나 차관에 의한 서구 선진국으로부터의 대대적인 기계, 설비, 플랜트 등 자본재의 도입은 제1차 석유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과 수출부진으로 북한에게 1970년대 중반 이래 외채누적과 대외신용의 상실을 가져다 줌.
- 1980년대 초반 북한은 대외교역의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 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해 서구 선진국과의 교섭을 다시 추진한 바 있

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따라서 북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차관 도입을 대신할 상환부담이 없는 외자유치 방법인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였음.
 -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1979년 8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중국의 대외경제개방의 성과에 고무되었던 것으로 보임.

2. 외자유치의 현황 및 부진 요인

-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1991년까지 북한이 외국 기업과 합의한 합영사업 건수는 약 140여 건, 투자유치 금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 외국투자의 대부분은 조총련 기업과의 소규모 합영이었음.
 - 조총련 기업인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 덜 비판적이며, 이들의 북한내 투자는 북한에 대한 충성 및 북한 내에 있는 가족, 친지들의 지위향상과도 무관하지 않음.
- 1980년대 외자유치(합영사업)가 부진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의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의 어려움, 사회간접자본의 미

- 비, 낮은 대외신용도, 경직된 경제관리운영체제 및 좁은 내수 시장 등 투자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임.
-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지속해 왔기 때문임.
 - 중국과는 달리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경제특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외자유치 관련법이 미비했기 때문임.
- 북한이 「합영법」 제정 당시 중국과는 달리 경제특구를 설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경제특구의 관리체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의 자주권과 시장메카니즘 등 자본주의 요인들이 폭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해 주민이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 했음.
 -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험 자체를 김 일성 유일체제와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 1980년대 중반 이래 구소련과의 정치·경제적인 밀월관계는 경제특구의 설치를 지연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1984~1988년 기간 동안 북한의 구소련으로부터 수입은 4배 이상 이례적으로 급팽창하였으며, 이는 서구 선진국과의 합영부진에 따르는 자본과 기술도입의 부족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것이었음).

Ⅲ. 1990년대 대외개방 확대 조치

1. 외자유치 관련법 정비 배경

-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켰으며, 특히 구소련의 해체에 따르는 경제 협력(수입)의 감소는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켰음.
 - 사회주의체제의 내재적 모순 및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국제질서의 대변혁으로 북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됨.
- 이와 관련, 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대안으로 중국 등이 채택해 온 경제특구의 설치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됨.
-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에 의거 나진·선봉지역을 중국식의 경제특구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의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함.

- 두만강유역에 위치한 함경도 최북단의 오지인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은 주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노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노출의 최소화는 보장된다고 판단하였음.
- 북한이 「합영법」 제정 당시에는 고려하였으나 설치하지 않았던 경제특구를 그 후 7년이 지나서 설치하게된 배경은 1992년 이후 진행된 일련의 외자유치 관련법의 정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로 북한이 취할 다음 조치는 1980년대 중반에 제정된 외자유치 관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었음.

2.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 현황

- 1980년대 중반 제정된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은 다음과 같음.
 - 1984년 9월 8일 「합영법」 제정
 - 1985년 3월 7일 「합영회사소득세법」,
3월 17일 「외국인소득세법」,
3월 20일 「합영법시행세칙」,
5월 17일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과 「외국인소득세법세칙」 제정

○ 1992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외자유치 관련법은 다음과 같음.

- 1992년 10월 5일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제정

10월 16일 「합영법시행세칙」 개정

- 1993년 1월 31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0월 27일 「토지임대법」,

11월 24일 「외국투자은행법」,

11월 29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12월 30일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정

- 1994년 1월 20일 기존의 「합영법」 개정

○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가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합작, 합영, 외국인기업의 창설·운영 방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합작법」, 개정된 「합영법」,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이라 할 수 있음.

-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투자은행법」도 하위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령으로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한 일반법의 성격을 지님.
 - 이 법의 제정으로 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기존의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동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동법세칙은 북한측의 존폐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외자유치 관련법은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령과 관련을 맺고 있음.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에도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환의 거래 및 반출입 등과 관련한 원칙과 절차를 규제하는 「외화관리법」, 외국투자가와 외국기업의 토지 임대 및 이용에 관련한 「토지임대법」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의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법령이 규정한 노동인력 관리운영에 대한 시행세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시행령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은 상당 부분 중국의 관련법을 참고하거나 원용하고 있음.
 - 「토지입대법」은 중국의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재양도 잠정조례」를 참고함.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과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실시규칙」을 참고함.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중국의 관련법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는 달리 외국투자가들에 적용할 각종 세제를 하나로 종합한 것이 특징임.
- 한편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은 「합영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외자유치 관련법 각각의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필요한 법률의 추가제정이 있어야 하고 내부법과 외자유치 관련법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후속조치도 있어야 할 것임.
 - 개정된 「합영법시행세칙」의 경우에도 개정된 「합영법」 이전에 제정된 것임으로 추가 개정이 요구됨.

3. 외자유치 관련법의 주요 특징과 의의

- 최근 외자유치 관련법의 제정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경제개방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북한의 정책전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기존의 외자유치 관련법에서 미비했던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대북 투자 회피현상을 해소하려 하였음.
 -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를 장려한다는 원칙(외국인투자법 제1조)을 채택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합영법」 발표 이후 10년 만에 북한의 외자유치와 관련한 법적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 우선 북한은 과거 합영에 국한되어 있던 외국인이 북한 내에 투자하여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를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3가지 형태(외국인투자법 제2조)로 확대하였음.
 - 합작기업은 북한측과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나 운

영은 북한측에서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임.

- 합영기업은 양측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고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임.
- 외국인기업은 투자와 경영이 전적으로 외국투자자에 있는 기업임.

○ 외국투자자는 북한 내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외국투자은행법 제2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외국투자은행에게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활동의 독자성이 인정(외국투자은행법 제3조)되고 있음.

- 외국투자은행의 종류에는 합영은행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 가능한 외국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이 있음.

○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100% 외국인 투자에 의한 외국인기업 허용(외국인투자법 제2조 및 제3조)
- 외국인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 부여(수출입물자에 대한 무관세: 외국인투자법 제9조 1항; 소득세 감면 및 낮은 소득세율 적용: 동법 제9조 2항)
-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의 편의를

6조, 토지임대법 제2조, 외국투자은행법 제7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2조, 외국투자은행법 제7조)로 확대함.

- 법인소득세, 장려부문(자유경제무역지대내 생산부문 포함)에서의 소득세 감면, 재투자시의 소득세 환급(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2조, 제15조 2항, 제16조) 등 북한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중국에 비해 대체로 세제상 우대 조치하고 있음.
 - 법인소득세: 북한은 일반지역에서 25%(중국은 30%),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14%(중국은 경제특구에서 15%)
 - 소득세 감면: 북한은 장려부문(자유경제무역지대내 생산부문 포함)에서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할 경우 이윤 발생 후 3년간 면세하고 다음 2년간은 50% 범위 내에서 감세(중국은 이익 발생 후 2년간 면세와 다음 3년간 50%까지 감세)
 - 재투자시의 소득세 환급: 북한은 이윤을 재투자하여 5년 이상 기업경영을 할 경우 소득세 납부액의 50%까지 환급(중국은 40%)

- 북한은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개정된 합영법 제7조)을 두어 우선적으로 해외동포들의 대북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외국투자자들에게 적용될 세제상의 법규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 같음.

- 유엔개발기구(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독자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외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세제상 대체로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세제상의 우대조치만으로 투자여건이 좋다고 말할 수 없으나,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토지임대법」을 제정한 것은 생산수단 국유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임.

- 외국투자가와 외국기업에 대해 토지이용권의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 및 저당을 허용(토지임대법 제15조)함으로써 북한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것은 경제개방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4. 외자유치 관련법의 문제점

○ 한편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에 있어서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하는 조항(합작법 제13조)
 -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수입에 대한 사전 승인(합작법 제12조)으로 합작기업의 물자조달에 차질 예상
 - 북한 근로자의 우선 사용을 요구하는 종업원 채용의 배타성(외국인투자법 제16조, 외국인기업법 제20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1조, 개정된 합영법 제26조)
 - 외국인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요구(외국인기업법 제15조) 등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나친 간섭
 - 분쟁발생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에 의존해야 하는 조항(외국인기업법 제31조, 합작법 제21조,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48조, 외국투자은행법 제32조)
 - 기존 합영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등록)자본을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 없는 조항(외국인기업법 제26조, 개정된 합영법 제15조)
-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 또는 토지임차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외국인기업 및 합영기업에게 사실상 이중부담인 보험을 들 경우 반드시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외국인기업법 제23조, 개정된 합영법 제31조)
 -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임대 및 이

- 용과 관련하여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의 양도 또는 저당시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토지임대법 제15조)
-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당국의 우선 구매권(토지임대법 제19조)
 - 40년 이상 토지를 임차하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 토지임차자가 해당토지에 설치한 건물과 부속물에 대한 보상없는 반환(토지임대법 제34조)
- 그밖에 내용이 모호하거나 북한의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있는 조항도 있음.
-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외국인기업법 제3조) 및 “인민경제발전에 해를 주는 행위”(외국인기업법 제5조) 등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외국인 투자시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모든 조건들을 명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상에 따라 처벌한다는 조항(외국인기업법 제29조)은 주체가 모호하며 법의 적용이나 해석에 북한의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많음.
- 노동임금과 관련하여 노임을 북한 원화로만 표시(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26조)하고 있어 환율 적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외자유치 관련법 여러 곳에서 개방에 따른 체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여 개방의 바람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내로 국한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음.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을 제정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사증 대신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초청장으로 가능(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6조)하도록 하였으나, 운용 여하에 따라 이것은 사실상의 사증심사제도로써 외국인의 입출국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한 것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우대하는 것은 이 지대에 대한 외자유치를 우선시한다는 의미 외에 개방의 바람을 이 지대에 국한하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음.

- 비록 이번의 법제정을 통해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규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상대적으로 미흡함.
 -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법규 외에도 섭외경제계약법, 특허법, 상표법, 외국인투자 장려규정, 기타 조세에 관한 규정 등의 국가차원의 법규뿐만 아니라 이들 외에도 지방정부차원의 특별법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음.

IV. 대외개방 전망 및 대응방안

1. 외자유치 및 대외개방 전략

- 북한의 경제진로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로 이미 대외경제개방으로 선회하고 있음.
- 최근 외자유치 관련법의 정비, 국내외에서의 각종 투자설명회 개최 및 UNDP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의 강화 등은 북한이 대외개방의 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개방 확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개혁을 위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함을 주민에게 선전하기 위해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 개방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현재의 정치·경제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임.

- 그 이유로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북한의 동북부 오지인 나진·선봉지역에 설치한 것을 들 수 있음.
- 최근에 제정된 외자유치 관련법은 적용대상의 범위에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을 포함하고 있음.
 - 기존의 「합영법」에서처럼 특별히 조총련 기업인을 지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과의 합영이 부진했음을 시사함.
 - 이제부터는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 등 각지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투자를 우선 환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조총련 기업인 등 북한에 우호적인 해외동포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방이 필연적이며 외자유치를 위한 합영사업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가급적 체제에 영향을 적게 주는 개방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2. 대외경제개방 전망

-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일련의 외자유치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개방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중국과는 달리

국내경제의 시장경제화 개혁조치는 함께 추진하지 않고 있음.

- 실질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체제개혁은 뒤로 미룬 채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체제개혁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개방을 반드시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임.

- 체제유지를 위해 실질적이며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도 나진·선봉과 같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고려할 것임.
-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시장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운용되는 특수지역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음.

○ 북한은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확신하에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치했음.

-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적인 개방정책(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성공여부는 북한당국이 중앙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 지대 내에서 만이라도 경제개혁(자본주의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을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중국의 경제개방을 참고하여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임.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기 전에 북한당국자들은 중국의 경제특구를 시찰한 바 있음.
 -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의 대부분은 중국의 관련법들을 참고하거나 원용하였음.

-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모델로 삼아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개방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중국의 경우 연안지역을 먼저 개방하고 이러한 개방을 내륙으로 확산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적 요소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였음.
 - 북한은 일부 지역을 개방하되 이 지역에서의 개방 바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것임.
 - 체제안정 속에서의 경제회생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의 폭을 어쩔 수 없이 확대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 중국과는 차이가 있을 것임.

-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방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성공한다면 이와 유사한 경제특구를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3. 우리(한국)의 대응방안

-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경제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일부 지역만을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이 지역 내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이 체제개혁은 뒤로 미룬 채 부분적인 개방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북한의 중요한 정책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북한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북한의 대외개방 전략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대응방안도 여기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선택 밖에 할 수 없었던 북한의 고충을 먼저 고려해야 함.
 - 비록 북한의 변화시도가 미흡하게 보일지라도 이러한 조그마

한 변화라도 우리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이 개방의 바람을 일부지역에 국한시키면서 경제난을 해결하려해도 외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개방 바람이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만 머물기를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 이 지대 내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에 명시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에 우리 기업(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남북대화의 재개시 확인되어야 할 것임.
-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북한의 「토지임대법」과의 상충되는 부분 등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법·제도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임.

- 남북경협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을 덜어주는 ‘당근’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는 ‘채찍’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따라서 우리는 국민·기업·정부가 혼연일체되어 남북경협을 조속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統一情勢分析 94-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4년 2월 일

發行日 1994년 2월 일
